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-

# 専門委員 檢討報告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-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제안 이유

- 도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,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과 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.

주요 골자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비 (안 제2조제2항, 제3항)
  - 광주민주유공자 ⇒ 5·18민주유공자
  -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⇒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  - 국가유공자 ·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
⇒ 국가유공자 등
-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 (안 제3조제1항)

- 종전에는 평생교육시설용(박물관, 미술관 등)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였으나 등록이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” 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(안 제8조)
-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항 신설 (안 제16조제2항)
-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“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”에게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(안 제17조제2호)

##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, “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”을 “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” 등으로 일부 조문을 문맥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과
-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로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추가하고,

-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 면제를 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하며
-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조문이 “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된 평생교육시설”로 되어 있어 등록후에는 현실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으로 이를 “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”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
-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종 장애인 배우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특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.
- 다만, 도세 감면대상을 추가 또는 확대함으로서 세수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, 앞으로 동 조례 개정시에는 반드시 세수증감에 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